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51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박 정·어기구·김정호

임오경 · 김병기 · 소병훈

강유정 • 김현정 • 송기헌

송옥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8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키면서 단순 더위가 아닌 재난으로써 폭염에 대응·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
각 군에서도 폭염·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있지만, 해마다 폭염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온열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.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, 2022년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한바 있음.

이처럼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 황임.

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

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,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·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3(폭염·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)

- ① 지휘관은 폭염·한파 등으로 인하여 「기상법」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.
- ② 국방부장관은 폭염·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 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훈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7조의3(폭염・한파 등에 따른
	조치 등)_
	① 지휘관은 폭염・한파 등으
	로 인하여 「기상법」에 따른
	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부
	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
	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
	는 등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
	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	② 국방부장관은 폭염・한파
	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
	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
	시행하여야 한다.
	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
	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
	은 국방부장관 훈령으로 정한
	<u>다.</u>